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15

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서동용・이동주・유정주

인재근 • 양정숙 • 안민석

서영교 • 박홍근 • 김승남

양이원영 · 배진교 · 김병욱

고영인 • 박 정 • 김회재

남인순 • 이탄희 • 윤관석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을 위해 설립된 한국학교의 수업료, 학력의 인정,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, 수업과 수업일수, 휴업일 등 중요한 학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학교현장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온·오프라인 병행수업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여 관련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

이에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·정보통신 매체를 이용

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수업 등) ① 수업은 주간(晝間)·전일제(全日制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·계절수 업·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.

-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따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1. 원격수업 등 방송·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
- 2.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업 인정
- ③ 학교의 학기·수업일수·학급편성·휴업일,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8조의2(수업 등) ① 수업은 주 간(晝間)・전일제(全日制)를 원 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간수업・계절수업・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.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교육부 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 에 따른 수업을 실시할 수 있 다. 1. 원격수업 등 방송·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2.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 동의 수업 인정 ③ 학교의 학기・수업일수・학 급편성・휴업일, 그 밖에 수업
	<u>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</u> 로 정한다.